

운영규정 개요

1. 운영규정의 개요

- 1) 입소정원에 관한사항 : 정원 43명
- 2) : 인터넷 광고,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 홍보물 제작,
지역사회 유관 기관 연계, 이용인 보호자의 추천 및 대상자별 개별 접촉 등
- 3)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 가. 계약기간 : 계약일~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나.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 서비스 제공자(을)와 서비스 이용자·보호자(갑)간 표준약관상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다.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속하여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4)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가. 응급발생 →담당직원 긴급파악 →간호조무사, 시설장 →보호자 및 119
- 5)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가. 입소자는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멸실에 대하여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 나.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는 본 요양원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2026년 1월 1일 기준)

직종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위탁)	조리사(위탁)	합계
인력	1	1	2	2	1	20	1	2	30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1)식재료비 : 식비 1식 4,000원 X3회 / 간식 1회 1,300원X1회
- 2)이미용비 : 별도 비용 없음
- 3)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 2인실 / 1일당 5,000원

5.시설의 규모 및 설비

1)대지 및 건물 면적

대지	건축면적
1,938㎡	364.55㎡

2)시설현황

구분	1층	2층	3층
시설현황	생활실6, 사무실, 간호사실, 화장실3, 목욕실, 보일러실	생활실6, 요양보호사실, 화장실2, 린넨실, 비상재해대피실	물리치료실, 자원봉사실, 사무실, 주방, 화장실 2, 세탁실, 프로그램실, 비상재해대피실

6. 보험가입 여부

배상책임보험 : 한화손해보험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2025.11.30. 00시 ~ 2026.11.30. 00시]

운영규정 개요

1. 기본정보

명	아름다운인생요양원	설치일자	2021 . 11 . 01
급여 종류	시설급여	입소정원	43명
대표자	이의영	협력의료	안성 성요셉병원
주 소	안성시 샛터1길 22-1		
비급여 항목	식사(간식)재료비	식비 1식 4,000원 X3회 / 간식 1회 1,300원 X1회	
	이미용 비용	별도 비용 없음	
	상급침실 비용	2인실 5,000원 (1박 기준)	
시설규모	건물면적 364.55㎡ , 연면적 1,938㎡		

구분	생활실	사무실	요양보호 사실	자원봉 사자	의료 간호	물리 (작업)	프로 그램	식당/ 조리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실
시설	○	○	○	○	○	○	○	○	○	○	○

2.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2026년 1월 1일 기준)

직종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영양사 (위탁)	조리사 (위탁)	합계
인력	1	1	2	2	1	20	1	2	30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의료서비스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 시설이용 자를 진료하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
특별보호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배상책임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연장)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해야 한다.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수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입소자의 생활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소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수급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
시설물 사용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한다.

운영규정집 참조

본 원 내 비치된 규정집에서 세부사항 확인가능 함.

